

| 구분 | 서류유형 | | 해당 서류 | 발급 기준 |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공통 서류 | ○ | | 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| 본인 | 당사 견본주택 비치 ※인터넷청약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|
| | ○ | | 청약통장순위 (가입) 확인서 | 본인 |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서비스 (www.applyhome.co.kr)에서 발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 특별공급 제외) 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(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) ※인터넷청약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|
| | ○ | |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| 본인 |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 필수(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) |
| | ○ | | 신분증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본인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/ 변동사유 포함 발급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본인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/ 변동사유 포함 발급 |
| 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 발급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배우자 |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'상세'로 발급) |
| | | ○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 |
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| |
|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| ○ | |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| 본인 |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|
| | | ○ |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피부양 직계존속 |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자녀 |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|
| 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배우자피부양직계존속 |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, 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|
| | | ○ |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| 본인(또는 배우자) |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|
| | | ○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(또는 배우자) | 입양의 경우 |
| | | ○ |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| 본인(또는 배우자) |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|
| | | ○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본인 |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|
| | | ○ | 기본증명서 | 자녀 | 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|
| 대리인 접수 | ○ | | 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인감도장 | 청약자 | 용도 : 당첨자 서류접수 위임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|
| | ○ | | 위임장 | 청약자 |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 비치 |
| | ○ | | 신분증 | 대리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|

※ 상기 서류 이외에 자격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 ※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6.12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